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2,909,323	19,887,280
일반회계	621,956,601	18,658,698
특별회계	40,952,722	1,228,582
공기업특별회계	8,929,940	267,898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8,929,940	267,898
기타특별회계	32,022,782	960,68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89,260	44,678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84,296	44,5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61,263	28,83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22,899	24,68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2,963,659	388,910
수질개선 특별회계	7,700,784	231,024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667,26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